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

의안 번호	2019 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일
제 출 자 : 강 서 구 청 장

1. 제안근거

지방자치법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2. 제안사유

○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
○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(2019.4.23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(규약 제13·14조)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
-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, 제158조

나. 현행 규약 1부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”를 “회장단체에 납부하고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항, 제2항으로 구분하고,
제14조 “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”를 제14조 제1항에 “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에 “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” 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회비 및 분담금 등) ② 일반회비는 연36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,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.	**제13조(회비 및 분담금 등)** ② ---------- 회장단체에 납부하고, -------- ----------
제14조(회계관리)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 매년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	**제14조(회계관리)** ①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---------- ----------
제14조(회계관리) <신 설>	②회장단체 변경 시,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.

관 련 법 령

❑ 「지방자치법」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

2012.11. 7. 제정
2015. 6. 5. 개정
2016. 6.10. 개정

제 1 장 > 총칙
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(이하「협의회」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원의 자격)
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. 단,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(개정 2016. 6. 10.)
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.
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의 승인에 의한다.
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으로 구성하고,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의 위원이라 한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4 조 (사무소의 위치 등)

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.

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· 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 · 관리 한다.

제 2 장 > 임원 및 운영

제 5 조 (임원의 구성 등)

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.

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 (임무)

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,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3 장 > 회의 등

제 8 조 (회의)

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, 개최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① 정기회의 : 연 2회 이하
② 임시회의 :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

제 9 조 (개회 및 의결방법)
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등)
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
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
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
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
⑤ 기타 협의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11 조 (사무처리)
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회장이 속한 시 · 구의 업무담당 실 · 과 · 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실무협의회 운영 등)
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· 운영 한다.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 · 과 ·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 · 과 · 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

할 수 있다.
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 4 장 > 재정

제 13 조 (회비 및 분담금 등)
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.
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,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.(개정 2015. 6. 5.)

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· 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,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제 14 조 (회계관리)
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
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정)
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(별도규정)
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)

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성동구 · 서대문구 · **강서구** · 구로구, 인천광역시 남동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, 경기도 수원시 · 성남시 · 안양시 · 부천시 · 평택시 · 안산시 · 고양시 · 남양주시 · 시흥시 · 용인시 · 김포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포천시, 충청남도 천안시 · 아산시,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.

제 5 조 (회비특례)

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.

부 칙 (2015. 6. 5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6. 10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